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2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장규권 의원·고영찬 의원·윤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2)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1인가구 지원사업을 사무 위탁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

2) 주요 내용

가)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1인가구 사업을 위탁할 경우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책 시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